

	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2. 1. 1.
		최종개정일자	2021. 6. 1.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(정교수)에 관한 심사기준과 목포과학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06.01>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06.01>

②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이 된다.<개정 2021.06.01>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의 사무는 교원인사 담당자가 한다.<개정 2015.8.12>

제3조(위원장 직무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<개정 2015.8.12>

제4조(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5.8.12>

③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 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참석할 수 없는 위원 수만큼 재적위원에서 감한 수를 재적위원 수로 한다.

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되, 출석위원의 서명 . 날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5.8.12>

제5조(심사대상) 부교수로서 교수 승진임용 후보자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.<개정 2015.8.12>

제6조(심사시기) 정년보장교원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승진 임용 3주 전에 한다.<개정 2015.8.12>

제7조(심사기준) ①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교수 활동 실적(성과평가)
2.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복무자세
3.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<신설 2015.8.12>

제8조(심사자료)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위해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.

1. 연구 및 연수실적 자료
2. 교수성과평가 자료
3.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평정표<별첨 1>
4.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<변경 2015.8.12>

제9조(심사방법) ①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대상 교원에 대하여 별첨한 교수정년보장 심사

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확인한다.

②평정 점수 100점 중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.

③정교수의 승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교원의 20% 이내로 한다.

④위원회에서 심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15.8.12>

제10조(임용동의)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한다.

제11조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요구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첨 1〉

교수정년보장 심사 참고자료

세부사항	내 용
①교수 활동 실적(성과평가)	
②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복무자세	
③대학발전에 대한 기여	

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피평정자 소속:

직급:

성명:

(인)

1.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야한다.
2. 현 직급 임용기간내의 사항만을 기재하고,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야 한다.
3.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 할 수 있다.

교수 정년보장 심사 평정표

피평정 대상자	
소속	
직급	
성명	

평정자 (정년보장 심사위원)	
위원	(서명)

항목	세부항목	평가 상한점수	평가점수
평정사항	①교수활동 실적(성과평가)	40점	
	②교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복무자세	30점	
	③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	30점	
	합계	100점	
의견			